

학과(전공) 경쟁력 확보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문화예술분야의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전문 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학과(전공)의 경쟁력 확보와 평가기준을 제시하여, 우수학과(전공) 선정 및 학과(전공) 폐지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기준 및 배점) ① 경쟁력 우수 학과(전공) 선정은 아래 표에 의해 평가하며, 상위 학과를 선정한다.<개정 2014.8.4>

평가항목	배점기준	비 고
신입생총원율	100%이상(100점), 90%이상(85점), 80%이상(70점), 70%이상(55점), 70%미만(40점)	
재학생총원율	90%이상(50점), 80%이상(43점), 70%이상(35점), 60%이상(27점), 60%미만(20점)	
산학협력활동	10건 이상(50점), 7건 이상(40점), 4건 이상(30점), 1건 이상(20점)	금액:1,000만원당 (1건)
사회봉사활동	10건 이상(50점), 7건 이상(40점), 4건 이상(30점), 1건 이상(20점)	
취업율	80%이상(50점), 70%이상(43점), 60%이상(35점), 50%이상(27점), 50%미만(20점)	

② 우수학과(전공)에 선정된 학과(전공)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통보하여 학생 장학금 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.

③ 아래 표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학과(전공)는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전공폐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도록 한다. 다만 재학생 총원율의 경우 신설 학과(전공)는 학생정원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평가항목	선정기준	적용방법	비 고
신입생총원율	60%이하로 2년간 지속될 경우	-4월1일자 -정원내입학자수/정원내모집정원	
재학생총원율	60%이하로 2년간 지속될 경우	-4월1일자 -정원내·외 재학생수/편제정원	

④ 기타 수요자선호도, 사회적수요, 학과(전공)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지가 필요하다고 교무위원회에서 인정되는 학과(전공)의 경우에는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서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.

제3조(평가절차) ① 기획조정처장은 제2조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우수 학과(전공) 및 폐지대상 학과(전공)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② 기획조정처장은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우수 학과(전공)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③ 기획조정처장은 제2조제3항과 제4항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학과(전공) 폐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해당학과(전공)에 대한 심의 여부를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 요청한다.<개정 2017.09.25>

제4조(폐지취소 및 신설) ① 폐지가 결정된 학과(전공)이 차년도에 제2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과(전공) 폐지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② 폐지가 결정된 학과(전공)에서 수요자선호도 및 사회적수요 등의 조사를 통하여 학과(전공)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(전공) 신설에 관한 심의를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2-9-3-3 학과(전공) 경쟁력 확보에 관한 내규

부 칙(2013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8. 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